

2022년도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22. 11

감사위원회

1.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 감사결과

1. 감사배경 및 목적

- 사회투자기금의 관리·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 달성 및 사업 전반의 불합리·불공정 개선

2.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사회적경제담당관)
- 감사기간 : '21. 12. 27.(월) ~ '22. 1. 21.(금) (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공공감사1팀장 등 6명
- 감사범위 : 사회투자기금 최초 운영부터 현재까지 관리·운영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사회투자기금 용자 수행기관 선정의 적정성
- 수행기관 용자 수행 관련 제반 법령·협약,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
- 수행기관 용자업무에 대한 감독부서 점검 및 제재의 적정성
- 만기도래·임박 채권 관리의 적정성(상환유예·이행연기특약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기관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7	1	23,200	0 (0)	0 (0)	1 (23,200)	1 (23,200)			1	2 (1)	0	0	13	0 (0)	0 (0)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내용	비고
1	이해관계 업체 및 회원사 대상 채용자 부적정	통보	○ 서울시 용자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상 명시된 이해관계자 용자 환수조항에 따라 이해관계 업체 간 용자한 금액의 환수 조치 방안 마련 ⇒ 법률자문 진행 후 조치방안 마련 예정	이행중
		통보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및 제재방안 마련 ⇒ 이해충돌범위 명확화, 이해충돌 재재(협약)해지, 환수 등) 장치 마련 ('22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22년 수행기관 모집공고)	완료
		통보	○ 「서울시 용자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및 「여신거래 협약서」 상 회원사 우대 등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방안 마련 ⇒ 회원모집 부당행위 금지규정 신설 ('22년 수행기관 모집공고)	완료
2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회피 의무 소홀	통보	○ 사회투자기금 용자 수행기관 선정 시 심사위원 제척·회피 미준수 등으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약서를 위반하여 회피하지 아니한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은 해촉 등 제재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 기금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 및 제재(해촉 등)장치 마련 ('22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완료
3	사회투자기금 중복 용자 및 기업당 연간 용자한도 초과	통보	○ 사회투자기금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업체의 연간 용자 한도를 초과한 업체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 강구 ⇒ 용자한도 사전확인 의무화 및 한도 초과용자시 제재규정 마련	이행중
		통보	○ 사회투자기금 중복용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연체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용자금지 계획 수립 ('22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내용	비고
4	사회투자기금 용자 채권 관리 미흡	통보	○ 부실채권의 변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 예금·동산·부동산 담보제공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용자 수행기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2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22년 수행기관 모집공고)	완료
		통보	○ 사회투자기금의 상환유예·이행연기 심사시 해당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심사방식 개선 및 선제적 용자채권관리 방안 마련 ⇒ 사회투자기금 채권관리지침 수립	이행중
		통보	○ 사회투자기금 중 민간자금 조성 비율이 축소되어 서울시 재중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간자금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행기관 매칭비율 기준 상향 (현재) 1:1~5:1 → (개선) 1:1~3:1	이행중
5	미집행 용자잔액 반납처리 부적정	시정	○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6호)」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18.12.20. 용자금 수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응자한 수행기관 L, C에 대하여 미집행 시기금을 원금으로 하였을 때 발생했을 이자 6건 2,743,185원 환수 조치, 미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지연 반납한 수행기관 H에 대하여 기 반납액을 제한 20,457,466원 환수 조치 ⇒ 수행기관 별 조치사항 통보 및 환수절차 진행	이행중
		통보	○ 수행기관의 미집행 용자잔액과 발생 이자의 반납 시점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 적용 ⇒ 여신거래협약서 문구 수정 (기존) 수령일로부터 → (개선)협약일로부터 ('22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완료
6	용자 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개선 소홀	통보	○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용자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에 대하여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 재구조화 등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 전반의 재검토 추진 ⇒ 기금 관리운용 방식 변경 추진 검토	이행중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내용	비고
7	사회투자기금 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관리 부실	통보	○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의 사용이 없도록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항목 마련 및 수행기관 정기점검 의무화	이행중
		통보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성과평가 시행 ⇒ 사회투자기금 성과평가 및 분석 용역 추진	이행중

2.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부실운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을공동체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시민협력국, 행정국,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24), 區 중간지원조직(주민자치사업단 포함) 등
- 감사기간 : '21. 12. 22.(목) ~ '22. 1. 27.(목)(기간 중 25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9명
- 감사범위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등 마을공동체사업 운영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추진 과정 등 적정 여부
- 市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기능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 그간 운영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 관련 심층 감사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41	2	1,440	0 (0)	0 (0)	1 (1,440)	1 (1,440)	0 (0)	0 (0)	30 (1)	0 (0)	0 (0)	8	1 (1)	1 (1)

※ 수사요청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비공개

□ 총 평

- 마을공동체사업은 2012. 1. 1. 구 마을공동체담당관(현 지역공동체과)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같은 해 3. 1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당시 제명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음
- 마을공동체사업에 2021년 기준 약 3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2012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약 10년간 2천 2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지역공동체과 예산액 기준)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서는 2021. 1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중') 등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21년 연간 감사기본 계획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 서마중은 갑 연합에 근거없이 예산과 사무실 공간 및 인력을 부당 지원함으로써 약 4억6천만 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갑 연합 부당 지원 등 특혜제공 관련 지적사항
 - ①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사업비를 市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도,

서마중은 정당한 근거없이 갑 연합(이하 '갑')에 '14년부터 '21년까지 회비 101,000천 원을 납부함으로써 예산낭비

- 또한 위·수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갑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임금 총 346,060천 원 만큼 특혜 제공

※ 회비, 인건비 등 환수는 市 주무부서 승인으로 환수 어려움

② 지적재산권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간행물인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서마중 및 서울~~2222~~에 각각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중계약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A는 자신의 저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서마중과 서울~~2222~~에 각각 귀속 시킴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

○ 市 유관부서장 임용 후 행동강령 위반 등 이해충돌 관련 지적사항

①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에도,

- 서마중 센터장으로 재직('16년 1월~'18년 4월)하였던 C는 마을공동체 담당관으로 임용된 후('18년 5월~'21년 12월)에도 미신고하는 등 서마중 간부가 시 유관부서장으로 임용 후 행동강령 위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초래

※ 서마중 사무국장으로 재직('13년 1월~'13년 12월)하였던 B도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임용된 후('14년 8월~'18년 4월)에도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②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야 하고, 시설형 민간위탁의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함에도,

지역공동체과는 '15년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아닌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을 부당 심의하였고, '18년에는 '사무형'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2회 이상 재계약함으로써 관련 규정 위반

※ '18년 4월 별도의 적격자심의위를 개최한 후 심의결과 적격 의결

○ **면접점수 변경으로 합격자 변경 등 인사비리 관련 지적사항**

- ① 「☆☆구 마을자치센터 직원 채용공고문」 등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거치고, 면접시험에서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구 마을자치센터는 '18년 12월 주민자치사업단장을 선정하는 면접 시험에서 면접심사위원들이 개인심사표에 기재한 점수와 다르게 집계 점수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면접점수를 변경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탈락시키고, 차순위 득점자를 주민자치사업단장으로 선정(업무방해혐의)

- ② 「형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함에도,

○○구 마을자치센터의 수탁기관 대표는 '19년 6월 센터장을 선정하는 면접시험에서 자신이 센터장으로 내정하고 있다고 공언한 지원자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채 면접 시험위원장으로 참가한 후 의결함으로써 청렴서약 위반

- 센터장은 채용 직후인 '19년 8월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확보한 노트북을 수탁기관에게 공여하는 등 배임수증재죄 혐의(배임수증재혐의)

○ **인건비 및 국외여비 불법 편성 등 예산낭비 관련 지적사항**

- ①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항목별로 설정하여야 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서마중은 사업비 속에 비정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당 편성함으로써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부적정한 결과 초래

※ '21년의 경우 전체 예산액 40억 원 중 인건비는 41%인 16억 원이나, 사업비 속 인건비는 22.4%인 9억 원인 결과, 실질적인 인건비는 63.4%인 25억 원으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부적정한 결과 초래

- 또한 국외여비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부 산출 근거없이 국외여비로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 '18년의 경우 국외연수(♣♣)비로 41,727천 원을 집행하였으나, 국외여비 편성액은 15,862천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5,865천 원은 사업비 등 예산에서 부당 집행

② 「지방채정법」 등에 따르면 보조금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 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마을공동체담당관은 '12년부터 '21년까지 ○○○ 동네발전소 등 총 36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35억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금으로 부당 편성한 결과 서마중에서 불법 집행 초래

③ 그 외 예산낭비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마중) ♠♠법인 ♠♠ 관계자인 A·B 등 22명에게 강사비를 과다 지급 (16,476천 원)하거나, 호환되지 않는 프로그램임을 알면서도 준공 후 추가 발주 등 예산낭비(약 1억원), 자체 회의실 공간이 있음에도 외부 공간을 대관하여 대관료를 지급한 사례(약 1억 3천만 원)

(☆☆구) 당초 계약에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 계약을 체결 하는 등 예산낭비(1,440천 원)

⇒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관련자 신분상 조치요구) 토록 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함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서마중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특정단체에 근거 없는 회비 납부 및 공간과 인력 등 부당 지원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매년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시 협약서와 관련 규정,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라며,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이중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등 정책리포트 사업 운영실태 미흡	주의요구 통 보	① ‘○○○○○○○○○○○○’의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안 및 다양한 손해 회복 방안 마련 ② 앞으로 이중계약으로 인한 집필비 낭비 사례 등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 철저 ※ 서마중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지역공동체과) 행정국 (인사과)	개방형 임기제 부서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주의요구 주의요구 통 보	① 향후 소속 직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직무 겸직을 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시행 ② 향후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관련자가 채용되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 관련 업무처리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통 보	① 향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 철저 ② 향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시 민간위탁 유형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주관부서에 기관경고 조치	조치 중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강사료 등 과다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통 보	① 불충족된 강사 등급으로 과다 산정되어 지급한 강사료 및 원고료 등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함으로써 서울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 회복 방안 마련 ② 향후 지급기준 강사 등급 이상 강사료 과다 지급하거나 지급기준 대비 과다 산정되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행정지원시스템 운영관리 소홀 및 불필요한 계약으로 예산 낭비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이미 구축이 완료된 행정지원시스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자문료와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자체 회의실 등 공간이 있음에도 외부공간을 대관하여 예산 낭비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사업추진 시 외부공간 대관이 필요한 경우 내부 시설 및 공공장소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사업추진 시 불필요한 외부 공간 대관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정보화 용역의 사업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앞으로 업무추진 시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의 관리·감독 철저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조치 중
서 마 중	지방계약법 등의 절차를 위반한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요구	앞으로 계약 업무 추진 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민간위탁금 사업비 속 인건비 및 국외여비 편성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향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② 향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요구	향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예산 편성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앞으로 예산 업무 추진 시 예산과목의 중복편성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련 규정 준수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市 한시적 지원사업을 연장하여 인건비 등 추가 지원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서울시에서 정한 지침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수탁사무와 무관한 일자리 개발 사업으로 예산중복 지원 및 낭비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법인·단체·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미수료자에게 연구비 지급 등 마을실천대학 운영 미흡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민간위탁금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탁 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구	☆☆구 마을자치센터 직원 채용 부적정	주의요구 통 보	① 수탁업체 前 센터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하는 방안 마련 ② 앞으로 수탁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면접점수 조작 등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조치 중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구	☆☆구 마을자치센터 예산 중복 지출로 예산낭비	시정요구	부적절하게 지출한 유지관리 비용 1,440천 원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예산 낭비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	조치 중
○○구	○○구 마을자치센터 직원 공개 채용 절차 부적정 및 배임혐의	주의요구 통 보	① 앞으로 수탁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청렴서약서 및 공정한 채용절차 위반 등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② 수탁기관 임직원의 지방재정법 및 업무상 횡령의 죄에 대한 약식 명령이 확정 되었으므로, 「위·수탁협약서」 제19조 제2항 등 규정에 따라 협약해지	조치 중
◇◇구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소홀	주의요구 통 보	① 부적정하게 지급한 2개월분의 급여 중 20%에 해당하는 984,920원을 반납받는 방안 마련 ② 앞으로 수탁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조치 중
□□구	마을활력소 운영 부적정 및 근접 거리 내 마을활력소 중복구축	주의요구 통 보	① 앞으로 마을활력소가 전시공간 외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철저 ② □□구 △△동에 조성중인 '거점형 마을 활력소' 구축 과정에서 인접거리에 既 조성된 마을활력소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에 대한 기능(역할)이 중복되므로 향후 예산낭비 제거 방안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조치 중
서울시 ♡♡	엄정한 계약심사업무로 민간 위탁예산낭비 방지에 기여	통 보 (모범사례)	계약심사 과정에서 수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없이 포함된 감의 활동비 총 18,000천 원 등 137,802천 원을 삭감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의 표창대상자로 선정	조치완료

3. 2021년 제2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1. 감사배경 및 목적

-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21.6.9)로 인한 불법하도급 중점감사 실시 필요
- 시의회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사 강화 요청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6개 기관 발주 28개 공사
- 감사기간 : 2021. 10. 21. ~ 11. 10.(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7명(명예하도급호민관 연인원 29명 참여)
- 감사범위 : 건설공사 하도급 분야 전반

3. 감사중점

- 불법하도급(무자격하도급,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여부
- 하도급 부당 계약 및 불공정 하도급 여부
-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적정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9	2	-	-	-	1	-	-	1	16	-	-	12	-	-
			(-)	-	(-)	-	(-)	(-)	(2)	-	-	-	(-)	(-)

※ 기타 1건 :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설정

□ 총 평

□ 감사결과

-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해 우리 시, 소속기관 및 자치구에서 발주한 2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대부분 현장은 하도급 계약, 현장 관리, 대금 지급 등 분야별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하도급 사항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사 현장에서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지적되었음.

□ 주요 지적사항

합 계	무등록 무자격자 하도급	부당계약·불공정 하도급	대금지급 및 기타
16건	3건	7건	6건

-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 3건
 - 무등록 하도급 1건, 무자격자 하도급 2건
- 부당 계약·불공정 하도급 : 7건
 -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설정 2건
 - 선급금 지급 부적정 3건
 - 특허사용 협약체결시 기술사용요율 산정 부적정 2건
- 대금 지급 및 기타 : 6건
 -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2건
 - 노무비 지급 부적정,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2건
 - 기타 하도급 계약사항 발주청에 미통보 등 2건

□ 향후, 서울시 공사현장의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시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이번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는 행정처분, 관리의무를 소홀히 공사담당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함.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 기관(발주부서)에 통보함.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관계기관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조치현황	비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비계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임의 하도급	주의요구	- 하도급 관리업무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통보	- 관련 수급인에 행정처분, 고발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	조치중
2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하도급 계약 부당특약 설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임의변경	주의요구	- 하도급 부당특약과 관련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3	서울대공원 (나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 선급금 배부와 관련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통보	- 지연지급된 선급금에 대한 가산이자 지급	조치완료
4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하도급 계약 부당특약 설정	시정요구	- 부당특약이 설정된 하도급 계약서 수정	조치완료
			주의요구	- 하도급 부당특약과 관련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5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발주청 승인 없이 건설근로자 노무비를 1인에게 일괄지급	주의요구	- 노구비 구분지급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6	서울교통공사 (라사업소)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 선급금 배부와 관련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통보	- 지연지급된 선급금에 대한 가산이자 지급	조치완료
7	서울교통공사 (라사업소)	특허사용협약 체결시 기술사용 요율 산정 부적정	주의요구	- 특허사용협약시 기술사용요율 적용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8	서울교통공사 (라사업소)	공사현장 위험성 평가 미실시	주의요구	-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통보	-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한 시공사 및 기술자 주의 조치	조치완료
9	성동구 (마과)	건설업 무등록업자 하도급	주의요구	- 하도급 관리업무를 소홀히한 공사관계자 주의 조치	조치완료
			통보	- 무등록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해 행정 처분, 고발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 감사자 별점 부과	조치중
10	성동구 (바과)	비계공사를 부대공사로 판단 하여 무자격자 하도급 비계공사를 부대공사로 판단	주의요구	- 하도급 관리업무를 소홀히한 공사관계자 주의 조치	조치완료

연번	관계기관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조치현황	비고
	성동구 (바과)	하여 무자격자 하도급	통보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 감사별점 부과	조치중
11	성동구 (마과)	특허사용협약 체결시 기술사용 요율 산정 부적정	주의요구	- 특허사용협약시 기술사용요율 적용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12	성동구 (바과)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주의요구	- 전자인력관리제 사용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13	성동구 (바과)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통보	- 근로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수급인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완료
14	성동구 (마과)	하도급 계약사항 발주청에 미통보	주의요구	- 하도급 관리업무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통보	- 하도급 계약사항을 미통보한 수급인 행정처분 조치	조치완료
15	광진구 (사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및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 선급금 배부와 관련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16	광진구 (사과)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주의요구	- 전자인력관리제 사용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등	조치완료

4. 2022년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1. 점검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계획 등 수립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이행 중에 있음. 상반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점검대상 : 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과, □□□□본부, ▲▲▲▲▲▲▲▲
본부, ○○○○박물관, ◆◆◆◆◆◆사업소, ▷▷▷▷▷▷
센터, ◆◆◆◆◆◆사업소, ▽▽▽▽원, ◇◇◇◇◇◇공사, ●●●●
●●●●공단, ○○공사, △△△△△센터 등(17개 사업장 샘플점검)
- 점검기간 : '22. 4. 4.(월) ~ 4. 29.(금) (기간 중 18일)
※ 자료수집기간 : '22.4.4. ~ 4.5.
- 점검인원 : 안전감사1팀장 외 9명
- 점검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예방실태 전반

3. 점검중점

-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 여부
- 중대재해 발생 대비 분야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적정 여부
- 기타 시설물 등 안전관리 적정 여부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권고	기관 경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시정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36									2		57		77	

5.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술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립미술관,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과)
- 감사기간 : 2022. 2. 23. ~ 3. 23.(19일간)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5명(공익감사단 3명 별도)
- 감사범위 : 2019.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조직 관리, 인사·채용, 복무 관리 적정성
- 미술작품 전시, 교육, 홍보 적정성
- 미술작품 수집·관리 적정성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용역 계약체결 적정성 등

4. 지적사항 총괄¹⁾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30	2			1 (1)	4 (0)			4 (0)	14 (0)	1 (0)		10 (0)	

1) 현지 조치사항 총 4건 제외(주의 4건)

□ 총 평

- 서울시립미술관은 1988년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전시역량을 발전시키고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공립미술관으로 평가됨.**
 - 서소문 본관 등 7개 시설에서 총 ○○백여 점의 소장작품을 보유하고 있고, 일 평균 관람객은 ○○백 명(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에 이르며,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내외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고 있음.
- 이번 감사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고 관행적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서울시립미술관 및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을 대상으로 **2022. 2. 23.부터 3. 23.까지 실시** 하였음.

【 중점 감사분야 】

- ① 조직 관리, 인사·채용, 복무 관리
- ② 미술작품 전시 운영, 수집, 보존·관리
- ③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등 자체 행사 운영
- ④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계약, 물품 관리 등 일반 운영·관리

-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및 비위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술관 운영 관련 제도 및 업무처리의 개선 요구, 인력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부적정, 소장작품 수집 및 관리 절차의 미흡, 시설 관리 및 관련 공사·계약 소홀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총 19건 확인되었음.

① 제도 및 업무처리의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는, ▲ 청사 일부를 무상으로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여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례, ▲ 보조사업 심의 시 주관부서장이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한 사례, ▲ 시립미술관장이 조례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자체 규정이 현실과 상위 규정에 맞지 않아 개정 필요가 시급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미술계의 특성과 기관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되 업무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② 인력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는, ▲ 임기제 직원이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미신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월 상한 기준을 초과한 사례, ▲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행사운영 등 경비 집행을 예산과목과 부합하지 않게 한 사례, ▲ 해외 소장 걸작품 전시 「빛: 영국테이트미술관 특별전」을 운영하면서 계약 당시 필수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업체와 전시안내지킴이 용역을 체결한 사례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 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등에 이르는 '보조금의 부정청구' 사항 등을 추가로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

③ 미술작품 수집 및 관리 분야에서는, ▲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자에게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세제 혜택 등 손해를 끼친 사례, ▲ 수장고 내 작품 관리를 위한 규정과 현실이 불일치하고,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소장 작품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 간행물(도록) 발간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며,

④ 시설관리 및 계약 분야에서는, ▲ ♠♠♠미술관 등 2개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설비의 경사각이 최적 경사각에 한참 미치지 못함에도 이를 승인하여 저조한 발전효율(요구 수준의 67%)을 초래한 사례, ▲ 전시환경 조성공사(11개)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사후 확인 없이 준공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 7개 시립미술관 CCTV(총 229대)의 약 88%가 사용연수(7년)를 초과한 저사양 제품인 점 등 시설관리 및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 기능에 취약한 사례, ▲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에 위반하여 기관장 전용 화장실을 운영한 사례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음.

□ 이번 감사를 통해, 시립미술관이 그간 급격한 외형적, 양적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조직 및 시설관리 역량,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함을 파악함.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내부 구성원의 공공성 확보와 복무규정 준수를 위한 조직문화 확보 노력도 요구됨.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조치현황

관련기관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립미술관 ♠♠♠부 ☆☆과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통 보	서소문 본관 3층 공간에서 발생한 「공유 재산법」 상 위법 상태를 해소할 방안 강구	조치 중
시립미술관 ◇◇◇부 ★★과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 공모사업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주 의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소속 직원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침 등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교육 시행,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지 않는지 관리·감독 철저	조치 중
문화본부 ◎◎과 시립미술관 ◇◇◇부 ★★과	미술작품 수집 및 관리 관련 법규 정비 소홀	통 보	①「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전반을 법률전문가에 의한 검토와 행정 실무에 적합한 개정 추진 ②상위법규의 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독기관 및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조속히「미술관 작품 수집·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	조치 중
시립미술관 ♠♠♠부 ☆☆과	외부강의 관련 복무규정 위반	주 의 (기관경고)	①「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외부강의를 하려는 자가 외부강의 사전· 사후 신고 등을 철저 ②외부강의를 하려는 자가 「행동강령」이 규정한 외부강의 월 상한을 초과해 외부 강의를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 외부강의 승인 업무 등을 철저	조치 중
시립미술관 ♠♠♠부 ☆☆과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주 의	앞으로 예산 과목별 집행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회계처리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립미술관 ♠♠♠ 미술관 ◇◇과	해외 소장 걸작품 전시안내지침이 용역업체 선정 부실	주 의	향후 계약 업무를 추진할 때 사전에 계약 상대방의 면허·허가 등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하여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중
시립미술관 ◇◇◇부 ▲▲과	기증작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업무 소홀	통 보	기증받은 미술품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국세청 질의회신 등을 통해 명확히 하여 세제 혜택 등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검토	조치 중
문화본부 ◎◎과 시립미술관 ◇◇◇부 ▲▲과	소장작품 전수조사 미흡 및 증감현황 보고 소홀	주 의 동 보	①시립미술관 운영 및 미술작품 수집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②소장작품 수를 감안하여 전수조사 담당 인력을 보강하거나 '복원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전수조사 검토 ③향후 소장작품 증감현황을 시의회에 보고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감독기관에 반드시 보고 바람	조치 중

관련기관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립미술관 ◇◇◇부 ◆◆과	소장작품 전시 도록 납본번호 부여 소홀	주 의	향후 시정간행물 중 하나인 도록 제작 시,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책수행 결과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와 필수배부처에의 납본 철저	조치 중
시립미술관 ♠♠♠부 ☆☆과 기후환경본부 ♣♣과	태양광 발전장치 설비 설치공사 업무추진 부적정	주 의 개 선 (기관경고)	①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서울시 건물태양광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설치기준 완화 여부를 결정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 ②태양광 발전설비 발전량이 설계발전량에 비해 저조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발전 효율 향상을 위한 집중관리 방안 마련 ③발주기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조치 중
시립미술관 ♠♠♠부 ☆☆과, ◇◇◇부 ◆◆과, ♠♠♠ 미술관 ◇◇과	공사 폐기물 처리비 지급 부적정	시 정 (기관경고)	공사 폐기물 처리비 지급 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정산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조치 중
시립미술관 ♠♠♠부 ☆☆과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교체 및 유지·관리 소홀	시 정 주 의	①7개 시설물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상도가 낮은 CCTV 전수조사 실시, 미술관 특성에 적합한 자료 저장기간 설정, 기간 만료 후에는 임의 자료삭제 이전 내부 검토 후 조치,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보안 USB 사용 등),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안내판 설치)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 ②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	조치 중
시립미술관 ♠♠♠부 ☆☆과, ◇◇◇부 ◆◆과, ♠♠♠ 미술관 ◇◇과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통 보 주 의 (기관경고)	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②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관련기관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립미술관 ♪♪♪부 ☆☆과	기관장 전용 화장실 설치 부적정	주 의 통 보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5조 제2항 및 [별표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기관장 집무실 전용 화장실을 공용화장실로 전환하거나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② 공사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전기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또한 무등록 계약업체의 실제 전기공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하고 「전기공사업법」제41조의 2(벌칙)에 해당 하는 경우 고발 등 조치	조치 중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실태 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사업 관련 최근 언론 비판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도출하여 효율적·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市(균형발전본부) 및 區 관리·감독부서
 ※ 市 - 광역센터 1개소, 현장센터 20개소, 區²⁾ - 현장센터 32개소
- 감사기간: 2021. 12. 29. ~ 2022. 2. 11.(기간 중 26일)
- 감사인원: 안전감사2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실태 전반

3. 감사중점

- 도시재생사업 지원업무 추진실태 등 적정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실태 전반
 -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 위탁사무 수행 및 관리·감독
 - 직원채용, 복무관리, 인사·복무 분야
 - 시설 운영, 공사·사업·용역시행 분야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인원)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³⁾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3	25	480			480		480	8 (3)			14 (22)	1		

2) 區 : 강북, 용산, 은평, 금천, 구로, 양천, 종로, 성동, 노원구 등 중점 표본 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 조치결과

연번	처분요구제목	관계기관	처분유형	조치내용	조치현황
01	광역센터 위탁 운영 부적정 및 행정재산을 수탁기관(사무형)에 임의제공	균형발전본부	주의	-민간위탁 추진 시 심의 및 승인 내용대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철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	조치 중
02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지원기관 간 업무 중복지정, 수행 부적정	균형발전본부	통보	-도시재생지원 관계기관(도시재생지원기관, 광역센터)에 대한 지원 업무체계 정비 및 관리·감독 등 개선 방안 마련 조치	조치 중
03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기준 미흡 등	균형발전본부	주의	-향후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관련 지침에 적합하게 공모 및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센터 운영사무의 전문성 확보할 것, 관련공무원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조치 중
04	보수규정 개정(승인 업무 검토 소홀) 및 호봉 부가급여 획정(책정) 부적정	균형발전본부	주의 통보	-수탁기관의 「보수규정」 개정 승인 시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없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보수규정 정비) 검토·승인업무 철저, 관련공무원 교육 실시 -임의·부당 지급된 금462백만원 상당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시정 등 해결방안 강구 ※ 관련공무원 신분상 조치, 수탁기관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관련공무원 신분상 조치 완료)
05	수탁기관(광역센터) 직원의 겸직 허가 관리 부적정	균형발전본부	주의 통보	-수탁기관 직원이 허가없이 겸직하여 불공정 및 시정의 신뢰도 훼손(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실시 등 지도·점검 철저, 관련공무원 관리·감독 철저 ※ 수탁기관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06	현장지원센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근무실태 관리기준 미흡	균형발전본부 양천구	통보 통보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시 ‘활동약정서’에 동 시기 타 지역 겸직근무 제한 및 근무지 외 근무시간 인정 범위 등에 대해 명문화, 전문가 수당 과다 지급 사례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 조치	조치 중 조치완료 (양천구, '22.8.8.)
07	구직자 채용분야 및 근무지 임의변경 등 합격자 선정 부적정	균형발전본부	주의 통보	-수탁기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철저 -수탁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 선정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강구 조치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조치 중
08	이해관계자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균형발전본부	주의 통보	-수탁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강화·개선토록 관계자 교육 실시하고, 관련공무원 관리·감독 철저 ※ 수탁기관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09	수탁기관의 직원 근로계약 부적정	균형발전본부	주의	-광역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수탁기관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조치, 향후 민간위탁 시 계약심사단 심사결과를 미반영하는 사례 없도록 직원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조치 중
10	희망지사업 부실 운영 및 용역 참여자 배치 부적정	균형발전본부	통보	-희망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이 의심되는 업체 선정, 용역감독 부실, 활성화지역 지정 미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실시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등 개선방안 마련 조치	조치 중

3) 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11	희망지사업 용역 인건비 부담 청구 수령 및 지급	균형발전본부	주의 통보	-수탁기관의 용역비 부담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 교육 실시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 철저토록 주의 조치 -발주기관을 기망한 용역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허위 청구·지급된 18백만원 상당 용역비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시정 등 해결방안 강구 조치 ※ 수탁기관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12	용역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으로 용역비 과다지급	균형발전본부	통보	-향후 수탁기관의 용역 시행 중 용역비 과다지급으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공무원 등 교육 실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철저 ※ 수탁기관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13	수의계약, 제한입찰 부적정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이윤 미정산	균형발전본부	통보	-향후 수탁기관의 용역 시행 중 용역비 과다지급 및 계약업무 부적절 운영 사례가 없도록 관련공무원 등 교육 실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철저 ※ 수탁기관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14	보험료 정산 내용 입찰공고문 미기재 및 정산 미실시	구로구	통보	-과다지급된 보험료 환수방안 등 강구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실시	조치 중
15	‘집수리 □□□□ 역량강화 시범교육 운영’ 교육시간 임의 축소 운영	균형발전본부	통보	-당초 계약된 과업지서서 상 교육시간 등을 준수하여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 교육 실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철저 ※ 수탁기관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16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미중물사업 추진 실태 미흡	균형발전본부	통보	-도시재생사업의 양적 확대, 공동체활성화사업 편중 추진 등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 및 효율성이 저하 되지 않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관련 조례 등 정비방안 강구 조치	조치 중

□ 현지 조치사항 일람표

연번	처분요구 제목	관계기관	지적내용	조치내용
01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근거 미비	균형발전본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추진부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해당 사무의 법적근거가 확보 되도록 관련조례를 사전에 제 개정하여야 함 -그런데 위탁지는 '19.3.5.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개별 조례 상 근거없이 '19. 3. 부터 '21. 12. 30.까지 집수리지원센터(광역 1개소, 지역 5개소) 운영 업무를 광역센터에서 운영하게 함 -그 결과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이 저하 된 채 주요 시정과제가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함 ※'21.12.3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집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근거 사후 확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민간위탁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별 조례의 민간위탁 근거를 사전에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후 조치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7.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 종합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사업추진 실태, 조직·인사 운영 및 시민불편사항 전반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5부 21과)
- 감사기간 : 2022. 3. 28.(월) ~ 4. 22.(금) ※ 기간 중 20일
 ※ 실지감사 : 4. 4.(월)~4. 22.(금)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7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 감사범위 : 2019. 1. 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업무

3. 감사중점

- 사업추진 분야
- 제도 및 업무처리 개선 분야
- 수도 요금, 체납관리 분야
- 계약 등 업무수행 분야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총건수 ¹⁾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²⁾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추급)
26	4	570	-	1 (1)	3 (570)	2 (350)	-	1 (220)	11 (3)	1	4	6	-	1 (1)

※ 기관경고(10) : 상수도사업본부(1), 수도사업소(8), F센터(1)

1) 총 건수에는 현지조치 1건 미포함

2) 신분상 조치 : 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1명

□ 총 평

〈 총 평 〉

- 이번 감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운영, 용역·계약 등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 전반의 적정 여부를 살펴보고,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2022. 3. 28.부터 4. 22.까지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아리수정수센터 약품탱크 약품 유출사고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2020년 가구 수질민원 사고 관련 관세척 공사 부적정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에 소홀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 등 총 18건 (감사대상 기관별 구분할 경우 26건)이 확인되었음
- 제도 및 업무처리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거나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또한, 수도 요금 체납관리 분야에서는 ① 체납에 대한 시효결손 업무처리 미흡, ②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업무처리 미흡, ③ 고액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미흡 등이 확인되었음
- 담당자 업무 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음

8. 서울로 7017 운영실태 감사결과

1.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로 7017 운영관련 수탁업체 선정 및 전문성 등 시의회, 언론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이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 서울로 7017 공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소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안전총괄실,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 감사기간 : 2022. 1. 12. ~ 2. 22. (기간 중 27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 3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14년 이후 서울로 7017 사업·운영관리 전반

3. 감사중점

- 서울로 7017 민간위탁 등 선정과정·운영실태 적정여부
- 서울로 7017 공사의 발주·계약·설계변경·준공 등 사업추진 전반
- 시설물 안전등급(D→B등급) 등 안전관리 적정여부
- 서울로 7017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 계 (인원)	시정(금액)				주 의 (인원)	개 선	권 고	통 보	고 발 (인원)	모 범 사 례 (인원)
총 건 수	신 분 상 조 치 인 원	재 정 상 조 치 금 액			소 계	추 징 (회 수)	감 액	기 타						
12	2		-	-				3 (2)			9	-	-	

※ 임기제 공무원 팀장(갑○○)은 퇴직으로 미처분(중징계)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 및 민간 위탁 계약관리 소홀	주의요구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계약 관리 및 민간 위탁 계약 수탁기관의 위·수탁협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철저히	조치중
		통보	임기제 공무원 '수사의뢰' 조치	조치중
2	민간위탁 발주 부적정 및 위·수탁 협약서 위반	주의요구 통보	민간위탁 시 위탁사무에 적합한 인력선출, 선정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지도감독 업무 철저히	조치중
3	민간행사비 과다정산 등 확인 소홀	통보	과다 정산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 방안 마련 조치	조치중
4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통보	전기공사 등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사례 없도록 담당자 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5	민간위탁업체 사무용기기 물품 인수 인계 부적정	통보	수탁재산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로 하여금 환수 방안 마련	조치중
6	무등록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주의요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한 관련 직원교육 및 신분상 처분 완료	조치완료
		통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및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7	안전등급 B→A등급 조정, 보행로 C등급 하락 우려	통보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 및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8	특정제품 선정절차 미준수 및 시공·품질관리 소홀	통보	시공상 하자 등 교면포장 균열·누수·들뜸에 대한 시공실태 검토 및 조치	조치중
		통보	근본적 하자보수 및 교면포장(LMC)과 바닥관 관리대책 마련 완료	조치완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8건 - 별첨